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64
----------	------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과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네이밍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존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안 제 4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9. 5. ~ 9.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안은 ‘안심소득’ 사업의 명칭이 시민공모를 통해 ‘디딤돌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관련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주요경과

- 서울시에서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 등 현재 소득보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형태로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기존 소득보장정책은 다인가구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1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가 경험하는 소득불안정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¹⁾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에 맞춘 소득보장, 까다로운 선정기준(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해소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²⁾

1) 변금선·이혜림,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지원 방안」.정책리포트 제380호, 서울연구원(2023.10.9.)

2) 류명석·정은하·이석민·최현수(2022).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모델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모형임.
 - 중위소득 85%이하('24년 4인가구 기준 4,870천원)³⁾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 비율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안심소득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에 실험연구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설계된 것으로, 제도 자체의 현실적 도입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정책실험’의 형태로 도입된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시작되었음.

〈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주요 추진경과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21.7.1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시 → 복지부) : '21.7.15
- 안심소득 추진 관련 시의회 협의 : '21.7.26~
- 사회보장제도 신설 전문가협의체 회의(복지부) : '21.8.10(1차), 9.10(2차)
 - (전문가 제안의견) ①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기준 불일치에 따른 “소득역전현상” 해소 필요, ②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지원 가구 규모 확대 필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기획조정회의(4회) : '21.8.12 ~ 10.13
 - 협의 모델(지원규모, 선정·지원기준), 지급수단 등 자문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복지부) : '21.10.1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복지부 → 시) : '21.11.1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 '22.3.28~4.8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소득재산 조사 : '22.5~6월

3)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되고 있음.

-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 : '22.7월(1단계), '23.7월(2단계), '24.4월(3단계)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 : '22.7.4.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년간의 안심소득 직접 지급기간 및 2년 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분석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델

○ 지원대상 규모 :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2,076가구 ※ 비교집단 3,527가구

- ▶ 1단계('22~'25년) : 중위 50% 이하 484가구 선정, 중위 85%의 미달액의 50% 지원
- ▶ 2단계('23~'25년) : 중위 85% 이하 1,100가구 추가 선정, 중위 85%의 미달액의 50% 지원
- ▶ 3단계('24~'25년) : 중위 50% 이하 492가구 추가 선정, 중위 85%의 미달액의 50%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가구별 소득 기준표 ('24년 기준, 단위: 천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	1,841	2,357	2,865
기준 중위소득 85%	1,894	3,130	4,007	4,870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재산 총액에서 '부채' 차감)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급액 : $[\text{기준 중위소득 } 85\% \text{ 기준액} - \text{가구소득}] \times 0.5$

· 소득이 0인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947천원 지원

· 가구별 월 최대 지원액

구 분('24년 기준, 단위: 천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894	3,130	4,007	4,870
월 최대 지원액 (본인 소득이 0원 일 때)	947	1,565	2,003	2,435

※ 연 2회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익월부터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

- 현행 복지급여 중 현금성 급여 6종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음

-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 서울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지원기간 : '22.7월 ~ '25.6월(3년) ※ '22~'26년 연구분석

○ 총사업비(5년) : 49,000백만원(사업비 4,290, 급여비 37,362, 연구·운영비 7,348)

- '24년 사업예산 : 21,301백만원(급여 20,284백만원, 설문조사비 등 1,017백만원)

나. 안심소득 네이밍공모 경과

-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안심소득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며 안심소득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새 명칭을 찾고자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였음.

〈 안심소득 네이밍 추진경위('24년도)〉

-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 개최(18천명 참여, 53만명 사이트방문): 6.17~7.10.
 -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 시민투표 후보 5개 선정 : 7.10.~7.25.
 - 1차 내부 심사(7.18.) → 2차 전문가 심사(7.23) (홍보·안심소득 전문가, 기자 등)
 -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투표 추진(45천명 참여, 80만명 사이트방문) : 8.10.~8.30.
 - 「디딤돌 소득」 최종 선정
- 해당 네이밍 공모에서는 총 150,62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상세 예산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안심소득 네이밍 소요예산

구 분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150,624천원	
공모전 홈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100,000천원	시민 공모전 및 시민투표 홈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상 금	4,000천원	최우수상 4명 상금 100만원
현장이벤트	18,128천원	경품구입비 및 현장이벤트 등
홍보물제작	28,496천원	현수막제작, 홍보포스터 제작, 홍보디자인 등

- 해당 네이밍 공모를 통해 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디딤돌소득’이 선정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선정된 이름을 공식 사업명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다. 조례개정안의 타당성

- 서울시의회에서는 제 314회 임시회(22.9.)⁴⁾에서 안심소득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안에서 안 제8조를 신설한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바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u>서울안심소득</u> 대상자	4. ----- ----- <u>서울디딤돌소득</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이안번호 9, 문성호 의원 외 75명 발의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8조(서울안심소득) 시장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 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u>서울안심소득</u>(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서울디딤돌소득) ----- ----- ----- ----- <u>서울디딤돌소득</u>----- ----- ----- -----.</p>

- 해당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네이밍공모를 통해 변경된 사업명을 해당 조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한 법률적 쟁점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4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과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네이밍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존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9. 5. ~ 9.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복지실 안심소득과 박지혜 (☎ 2133-843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서울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서울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u>서울안심소득</u> 대상자</p> <p>5. (생 략)</p> <p>② (생 략)</p> <p>제8조(<u>서울안심소득</u>) 시장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u>서울안심소득</u>(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서울디딤돌소득</u> ----- -----</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u>서울디딤돌소득</u>) ----- ----- ----- ----- ----- <u>서울디딤돌소득</u>----- ----- ----- ----- -----.</p>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추계 요약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시민투표로 인해 선정된 새로운 네이밍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고 기존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복지실 안심소득과 박지혜(☎2133-8436)